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3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4-113호, 2014. 4.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9조의3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7조의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7 및 제7조의9까지”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3 및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제2호 중 “위해요소(Hazard)’이란”을 “위해요소(Hazard)’란”으로 하

며, 제6호 중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함은”을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으로 하고, 제7호 중 “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하며, 제8호·제9호 및 제10호 중 “도축장”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하고, 제8호 중 “제7조의2제1항 제4호에”를 “제7조의3제1항제4호에”로 하며, 제9호 중 “HACCP적용작업장등이 정한 작성한”을 “HACCP적용작업장등이 작성한”으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통합관리프로그램’이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통합인증업체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HACCP을 적용·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도축장”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합인증관리) ①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족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관리책임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규모 업소 적용) ① 제3조 및 제4조에 도 불구하고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축산물영업장(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소규모 업소용 실시상황평가표를 활용하여 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중전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5항(중전 제4항) 중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등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전담조직의 HACCP 교육·훈련기록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예비심사 실시기록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운영규정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자체위생관리기준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계약관계
6.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7.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모니터링 및 검증실시 기록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축장”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도축장에 대하여“로 하며,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로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규칙 제7조의 6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영업자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작업전·중 위생상태 확인 포함)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 축산법령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에”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별지 제1호의4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의7에 따른 인증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제7조의2제1항·제4항 및 제7조의9에 따른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 연장신청 및 소재지 변경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11호 서식까지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를 “제7조의3제1항·제8항 및 제7조의5에 따른 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인증, 소재지 변경 및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의 안전관리인증기준실시상황평가표”로 한다.

제8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중 “지정”을 각각 “인증”으로, “기준원장”을 각각 “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 연장 및 소재지 지정변경 절차”를 “인증, 소재지 인증변경 및 연장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조의3”을 제7조의6”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농림축

산검역본부장(농장·집유장에 한함)”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농장에 한함)”으로 하고, 제11항 중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과”를 “식약처장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2항”을 “법 제9조의3제5항”으로 하고,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및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변경지정”을 “변경인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HACCP 심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HACCP 심볼 및 적용작업장 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6.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식육 중 미생물 검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②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안전관리인증”으로 한다.

③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제3조제2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별표 2 및 별지 1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